학교자치 운영규정 제정안

2019년 3월 18일

전주성심여자중학교

1. 제안주문

학교자치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제안한다.

2. 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 합리성 및 명확성을 보장하여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고, 학교교육의 주체(교직원·학생·학부모)가 권한과 근거를 갖고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주요내용

- 가. 초중등교육법, 동법시행령,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2019.2.1.)에 준하여 법제적 근거를 마련한다(안 제1장제1조).
- 나. 학교자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들을 법제화한다(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 1) 학교교육의 주체(교직원·학생·학부모)를 명문화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2) 학교자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한다(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가) 자치기구 : 교사회, 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나) 회의기구 : 교무회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기 타 : 별지 제1호 학교자치 운영규정 제정안

별지 제2호 교사회칙 제정안

별지 제2호의2 직원회칙 제정안

별지 제2호의3 학생회칙(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인용)

별지 제2호의4 학부모회칙 제정안

별지 제3호 교무회의 운영규정 제정안

학교자치 운영규정 제정안

[시행 2019.3.18.] [제정 2019.3.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동법시행령,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 합리성 및 명확성을 보장하여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주체(교직원·학생·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학교공동체 구현과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교육의 주체의 뜻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다.

- 1. "학교" 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말한다.
- 2. "학생" 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
- 3. "학부모" 란 학생의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4.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 5. "교사"란 교원 중 교장, 교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 6. "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의 직원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 7. "교직원" 이란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 8. "교무(校務)회의"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교직원 회의기구를 말한다.
- 9. "학교교육의 주체"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민주적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의

- 운영과정에서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학교교육의 주체가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③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④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지시나 요구로부터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제시한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⑥ 학생이 학교에 제시한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학교자치기구 제1절 자치기구

- 제4조(자치기구의 종류 등) ① 학교는 자치기구로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두고 직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하여야 한다.
- 제5조(교사회) ① 교사회에는 교과별, 학년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 ②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 2. 교사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 3. 교사들의 자체 연수활동에 관한 사항
 - 4. 교사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5. 학년별 · 교과별 협의 사항
 - 6. 그 밖에 교사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사회의 임원은 교사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 ④ 교사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사회칙(별지 제2호)으로 정한다.

제6조(학생회) ① 학생회에는 학년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②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 2. 학생자치활동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3. 학생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 4.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 5. 학생회칙의 제ㆍ개정 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
- ③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제23조부터 제40조까지를 학생회칙(별지 제2호의3)으로 갈음하여 정한다.
- ④ 학생회는 그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 ⑤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학부모회) ① 학부모회는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17.6.2.)에 따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학부모회에는 총회(전체회의), 대의원회(대표회) 등을 둘 수 있다.
 - ②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활동 참여ㆍ지원
 - 3.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4.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학부모회칙으로 정하는 사업
 - ③ 학부모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칙(별지 제2호의4)으로 정한다.
- 제8조(직원회) ① 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 2. 직원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 3. 직원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 4. 직원회칙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직원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직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직원회칙(별지 제2호의2)으로 정한다.

제2절 회의기구

제9조(교무회의) ① 학교에는 교직원 회의기구로서 교무회의를 둔다.

- ②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의 의장으로 교무회의를 진행하고, 서기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④ 교무회의의 토론과 결정은 교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통과 상호협력을 위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며, 회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시행한다.
- ⑤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의 심의결과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받아들인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 절차 및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등은 교무회의 운영규정(별지 제3호)으로 정한다.
- ⑥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규칙의 제ㆍ개정, 교무회의 및 교원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 2. 학교교육과정, 이에 소요되는 예산 등에 관한 사항
 - 3.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 안건에 관한 사항
 - 3. 학교운영과 관련한 교직원의 제안 사항
 - 4.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5. 자치기구(교사회, 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및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 6.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⑦ 교무회의는 학교의 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⑧ 정기회의는 교무회의 운영규정(별지 제3호)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학교의 장 또는 교직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하다.

부칙 <2019.3.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성된 교사회, 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무회의는 이 규정에 따라 자치·회의기구로서 구성·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교사회칙 제정안

[시행 2019.3.18.] [제정 2019.3.18.]

- 제1조(목적) 이 회칙은 초중등교육법, 동법시행령,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합리성을 보장하여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주체인 본교 교사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학교공동체 구현과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 1. "교원" 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 2. "교사" 란 교원 중 교장, 교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 3. "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의 직원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 4. "교직원" 이란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 제3조(회원) ① 회원의 자격은 전주성심여자중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직하는 모든 교사로 한다.
 - ② 필요한 경우 기간제 교사 및 파견 나온 교사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휴직 및 파견 나간 교사는 해당 기간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제4조(조직) ① 교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교사 20명 미만의 경우에는 별도로 대의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교사회 산하에 교과별 및 학년별 협의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분과별, 부서별 협의회 등 기능별 교사회를 둘 수 있다.
- 제5조(임원 등의 구성) ① 교사회는 회장 1명, 간사 1명(이하 "임원"이라 한다)을

두되, 임원의 겸임은 이 회칙으로 정한다.

- ② 임원 중 회장은 교무부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하되, 간사는 회원 중에서 민주적으로 선출하여 균형적인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6조(임원의 임기·직무·자격)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1. 회장의 임기는 교무부장의 보직 임기와 같다.
 - 2. 간사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은 1회로 한정한다. 다만, 임기는 매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하며 선출은 매년 겨울방학 개학 후 재적회원 중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궐위 시 재보직·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회장은 교사회를 대표하고, 교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교사회 사무를 처리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겨울방학 개학 후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실시한다.
 - ④ 회장은 총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총회 실시 7일 전까지 학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총회의 심의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 2. 교사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 3. 교사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 4. 교사회칙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 5. 학년별 · 교과별 협의회에서 회부한 사항
- 6. 교사회의 임원(간사) 선출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교사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당해학년도 임원, 학년별 및 교과별 협의회의 대표교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정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교과(군) 협의회 대표교사의 수에 따라 정하되,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 ② 대의원회의 회장은 교사회 회장이 겸임한다.
 -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실시한다.
 - ④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⑤ 회장은 대의원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실시 7일 전까지 학내통신망을 이용하여 모든 대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⑥ 대의원회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대의원회의 심의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제9조제1항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회부된 사항

부칙 <2019.3.18.>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세칙)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하거나 대의원회에서 회부하여 정한다.

직원회칙 제정안

[시행 2019.3.18.] [제정 2019.3.18.]

- 제1조(목적) 이 회칙은 초중등교육법, 동법시행령,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합리성을 보장하여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주체인 본교 직원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학교공동체 구현과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 1. "교원" 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 2. "교사" 란 교원 중 교장, 교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 3. "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의 직원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 4. "교직원"이란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 제3조(회원) ① 전주성심여자중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직하는 모든 직원은 회원의 자격이 있다.
 - ② 휴직 및 파견 직원은 해당 기간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제4조(임원) ① 직원회는 회장 1명을 두고, 간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둘수 있다.
 - ② 임원은 회원 중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한다.
 - ③ 회장은 직원회를 대표하고, 직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직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회장이 유사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궐위 시 재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① 회장은 학기 중 1회 정기회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실시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 2.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 2. 직원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 3. 직원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 4. 직원회칙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직원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직원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장은 회의결과를 학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2019.3.18.>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세칙)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직원회에서 정한다.

[별지 2의3]

학생회칙

[시행 2019.3.1.] [개정 2019.3.25.]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인용]

- 제1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유예) 또는 학교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개정 2019.3.25.〉
- 제2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9.3.25.〉
- 제3조【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하여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9.3.25.〉
- 제4조【효력정지】 <mark>학생회칙</mark>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개정 2019.3.25.〉
- 제5조【관장사항】 학생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 1. 학생 연구 활동
 - 2. 예술, 체육, 취미활동
 - 3. 각종 봉사활동
 - 4. 기타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 제6조【승인】 학생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 제7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3학년 1인, 2학년 1인) 〈개정 2019.3.25.〉
 - 2. 각 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제목개정 2019.3.25.]

- 제8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1.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 2. 학습정보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4. 종교부(가톨릭학생회장) : 각종 종교활동, 봉사활동,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25.〉
 - 5.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 제9조【직무 및 선출】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각 부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관장한다.
 -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의 부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3.25.〉
 - 2.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결상황이 출석률 90% 이상이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 3. 각 부의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회<mark>의</mark>에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25.〉
- 제10조【대의원회】 ①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두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5.〉
 - 1.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실장과 부실장으로 구성한다.
 - 2. 의장은 회장이 한다. 〈개정 2019.3.25.〉
 - ②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5.>
 -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2. 예산 심의
 -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4. 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심의
 - 5.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5.〉
 - 1.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의원 2분의 1 이상 또는 집행위원 2분의 1 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9.3.25.〉
-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mark>의원</mark>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개정 2019.3.25.〉
- 4.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mark>의안</mark>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개정 2019.3.25.〉
- 제11조【집행위원회】 ①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25.〉
 - ②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5.〉
 - 1. 대의원회<mark>의</mark>에서 회부한 사항 〈개정 2019.3.25.〉
 - 2. 사업계획
 - 3. 예산 편성 및 결산보고
 - 4. 기타 중요한 의안
- 제12조【회의】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생활인권안전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 제13조【예산 편성】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선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선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25.〉
- 제15조【회계연도】 학생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3.25.〉
- 제16조【학생분쟁조정위원회】 ① 학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은 회장, 부위원장은 부회장 2인, 위원은 본교 2, 3학년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 자로 구성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집행위원회에서 회부한 사항
 - 2. 학생자치 선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3. 학생 간의 갈등 분쟁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
 -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정기회의를 학기당 1회 실시하되 생활인권안전부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9.3.25.]

제17조【승인】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생활선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승인한다. 〈개정 2019.3.25.〉

- 1. 회칙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 2. 조직 및 편성에 관한 사항
- 3. 예산 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3.25.]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3.25.>]

제18조【회칙 개정】 회칙에 대한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집행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생활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9.3.25.>
- 2.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3.25.〉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3.25.>]

부칙 <2019.3.25.>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회칙 시행 당시 구성된 학생회는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에

따라 구성 ·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위임세칙) ①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하거나 집행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정한다.
 - ② 종전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제23조부터 제40조까지는 학교자치 운영규정 별지 제2호의3으로 이동한다.
- 제4조(개정규정) 이 회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학칙의 개정절차와 다르되, 제18조각 호에 따라 본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에서의 학생회칙과 동일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 제5조(개정) 학생회칙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 1.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의 본문을 수정한다.
 - 2. 제5조제4호, 제7조제1호, 제8조제4호, 제9조제2항제1호·제3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1조제2항제1호, 제18조제1호·제2호의 단서를 수정한다.
 - 3. 제16조의 본문을 신설한다.
 - 4.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한다.

[별지 2의4]

학부모회칙 제정안

[시행 2019.3.19.] [제정 2019.3.19.]

제1조(목적) 이 회칙은 본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본교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의 주체로서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회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 1. "학부모" 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2. "학부모회" 란 모든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 3. "총회" 란 모든 학부모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회의기구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 4. "대의원회" 란 학년별 학급별 학부모대표로 구성되어 학교자치 운영규정 또는 총회에서 회부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기구를 말한다.

제3조(설치) 학부모회는 본교의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여 둔다.

제4조(명칭) 전주성심여자중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라 한다.

- 제5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자치 운영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사항과 같이 수행한다.
 -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활동 참여ㆍ지원
 -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4.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학부모회칙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회원) 회원의 자격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 제7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으로 구성하되, 임원의 학년별 학급별 대표의 겸임 및 정수는 이 회칙으로 정한다.
 -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하며, 균형적인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다.
 -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8조(임원의 임기·직무·자격) ① 임원의 임기는 최대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② 학부모회 임원의 연임은 1회로 한정한다.
 - ③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간사는 학부모회의 사무 및 회계를 처리한다.
- 제9조(학부모회의 조직)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생 인원수가 100명 미만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및 학급별 학부모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아버지회, 어머니회 등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총회) ① 학부모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실시한다.
 - ④ 회장은 총회를 실시하려는 경우 회의 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총회 실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총회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총회의 심의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부모회 활동계획 수립
- 2. 학부모회칙의 제 · 개정 사항
- 3.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 4.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 ③ 총회 의결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에 권고한다.
- 제12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이하 "대표회"라 한다)는 임원, 학년별 및 학급별학부모회 대표로 구성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정수는 임원 및 학급 수에 따라대표회에서 정하되,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라대표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대표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 ③ 대표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실시한다.
 - ④ 대표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⑤ 회장은 대표회를 실시하려는 경우 회의 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연락망 등을 이용하여 모든 대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⑥ 대표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의원회의 심의사항) 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총회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의결로 대표회에 회부된 사항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15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한 날로 해산한다.
 -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는 해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든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본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6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 사무를 담당한다.

부칙 〈2019.3.19.〉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세칙)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하거나 대표회에서 회부하여 의결한다.

교무회의 운영규정 제정안

[시행 2019.3.18.] [제정 2019.3.18.]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동법시행령,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의 자율성 및 합리성을 보장하여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회의기구로서 교무회의를 두어 학교교육의 주체인 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학교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민주적인 교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회의는 전주성심여자중학교 교무회의(이하 "교무회의"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설치) 이 회의는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8조에 따라 본교의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여 둔다.
- 제4조(구성) 본교에 재직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임원 등의 조직 및 역할) ① 이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 간사 1명을 두며 의장은 학교장, 부의장은 교감, 간사는 교무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의장으로서 교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회의 준비, 회의결과의 처리 및 공표 등을 담당한다.
 - ③ 의장과 부의장이 부재 시 학교장이 정한 교직원이 회의를 소집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 ④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교무회의의 위임에 따라 학교운영의 각종 사항에 관련된 교과별 학년별 부서별 소위원회 등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학교 내 학생회, 학부모회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건의가 있을 경우 교무회의의 허가를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조(심의사항)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규칙의 제ㆍ개정, 교무회의 및 교원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 2. 학교교육과정, 이에 소요되는 예산 등에 관한 사항
 - 3.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 안건에 관한 사항
 - 3. 학교운영과 관련한 교직원의 제안 사항
 - 4.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5. 자치기구(교사회, 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및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 6.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이의제기)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다만, 교무회의의 심의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학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함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1회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① 교무회의는 학교의 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학교의 장 또는 교직원 4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회의를 실시하려는 경우 회의 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실시 3일 전까지 학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모든 교직원에게 공지하여 참여도를 제고하되, 교무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간사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야 한다.
 - ④ 회의는 교직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의 경우에는 교직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재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교무회의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⑥ 교무회의는 민주적인 방법과 회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운영하며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무회의의 결의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기타) ① 학교장이 정한 교직원은 회의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② 회의록은 주요결정사항 중심으로 회의결과를 별도의 형식(학교일지 등)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모든 교직원에게 공지한다.
- 제10조(규정의 개정) 개정안은 교직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되며 교직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칙 〈2019.3.18.〉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성된 교무회의는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위임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회의에서 의결한다.